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2021.1.26 제정 · 공포)

2021. 3. 25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목 차 ▶

1. 중대산업재해 정의(제2조제2호) / 2
2. 중대시민재해 정의(제2조제3호) / 5
3. 경영책임자등 정의(제2조제9호) / 7
4. 사업주 ·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 9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 14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 17
7.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제7조) / 20
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 / 22
9. 손해배상의 책임(제15조) / 24
10. 부칙 / 26
11. 종사자의 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 /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는 지난 1.8일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영계는 산재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투자확대 등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입법 제정 당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제정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고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전제조건인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의무규정 등을 포함한 많은 내용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도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재사고에 대한 형벌수준으로는 매우 과도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무위반 시까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부칙에 따라 50명 미만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원청만 중대재해법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와 같이 동 법률의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고, 법체계에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모든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소송폭증 등 부작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 법률의 재개정과 적용시기 유예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대산업재해 정의(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생략)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보완입법 요청사항]

- 가목을 ‘동시에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
- 다목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에 5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

가. 문제점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재해(1명 이상 발생) 개념을 산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에 규정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경영책임자등을 더 엄하게 형사처벌 하기 위한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부적합함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는 산안법보다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동일한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참고]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상 중대재해 정의 비교

구 분	중대재해법	산안법
사망자	사망자 1명 이상	좌동
부상자	6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범위도 재해강도(요양기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자 숫자도 산안법보다 적용대상이 완화되어, 가중처벌의 규범적 근거로 미약함
 - 중대재해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자와 같이 재해강도(요양기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원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피부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됨
 - 현행 산안법이 질병자 범위를 동시 10명 이상 발생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중대재해법은 질병자 3명 이상 발생으로 적용대상을 완화시킴
 - 또한 급성중독 외에 “등” 문구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시행령에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장시간에 걸친 만성질환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직업병 목록 등은 현 경영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불합리함

나. 경영계 의견

- 중대산업재해의 사망자와 직업성 질병자 개념을 특별법 목적에 맞게 엄격히 규정해야 함
 - 사망자는 “동시에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에 5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야 함

현 행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p> <p>가. <u>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u></p> <p>나. (생략)</p> <p>다. <u>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 ----- ----- -----.</p> <p>가. <u>동시에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u></p> <p>나. (생략)</p> <p>다. ----- <u>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에 5명 이상 발생</u></p>

2 중대시민재해 정의(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보완입법 요청사항]

특정 원료의 정의를 제2조제10호에 신설

- “특정 원료”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말한다.

가. 문제점

‘특정 원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특정 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음

- 동 법 제1조(목적)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 등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함
- 제2조(정의)제3호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중 “특정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정 원료가 무엇인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예측할 수 없음
 - 반면, 공중이용시설(제4호), 대중교통수단(제5호), 제조물(제6호)은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경우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670여종)’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 (중점관리물질) 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
- ② 인체 내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③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화평법 제정 취지에 따라 화학물질 중 유해·위험성이 높아 중점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

나. 경영계 의견

□ 동 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특정 원료'의 정의를 법률에 마련해야 함

현 행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9. (생략) 10. “특정 원료”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 정의(제2조제9호가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생략)

[보완입법 요청사항]

“경영책임자”를 1인으로 명확히 규정

“경영책임자등” 정의에 “사업대표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

가. 문제점

법률 내용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준하여”의 의미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업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또한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또는” 문구에 따라 사업대표와 안전보건담당자 중 1명으로 특정되나, 해석과 관련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는” 문구가 선택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표와 안전보건담당자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장 내 업종이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된 사업부가 존재하며, 각 사업부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사장, 전무 등)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부 단위로 경영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나. 경영계 의견

- 경영책임자 개념 및 중대재해법의 의무주체가 1명으로 명확해질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화 필요

현 행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신 설〉</p> <p>나.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을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후단 삭제></p> <p>나. 가의 사람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다. (생략)</p>

4 사업주 ·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생략)

[보완입법 요청사항]

- 제1항제2호의 '재해 발생'을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수정하고,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 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으로 수정하고,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 '지배·운영·관리'를 산안법과 동일한 '지배·관리'로 수정

※ 제9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동일하게 수정 및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가. 문제점

- 모든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들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큼
 - 제4조제1항제2호는 재해범위 한정 없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 재해에는 사업주의 법 위반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미한 재해(찢림, 베임 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재해까지 경영책임자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함

□ 법률 내용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의 범위와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제4조제1항제3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 “관계 법령”이 안전·보건 분야 법령에 한정되는지, 모든 국내 법령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제1항제2호·제3호는 시행령 위임근거가 없어, 각 호에 따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이행에 관한 조치”의 내용과 범위도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산안법상 의무규정과 동일 유사한 의무를 경영책임자 의무로 규정하여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체계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개선·시정명령 사항 이행 등 제4조의 모든 의무는 현행 산안법상의 의무규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함

○ 위반에 따른 가벌성이 산안법보다 크지 않은 경영책임자 의무위반에 대해 고위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임

○ 실제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폭행죄에 대해 형법보다 더 과중한 형량을 부과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헌재 2015.9.24. 2014헌바154)을 내림

□ 한편, 법률 내용만으로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지배·운영·관리”는 현행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나, 두 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범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범위가 혼동스러움
 - 법안심사 과정 중 “운영”과 “관리”는 비슷한 표현이라는 논의가 있었음
 -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혼용되어 규정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어느 단위로 적용되는지 불명확함
 - 한편, 산안법도 ‘지배·관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 시 원·하청간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불명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측면에서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의 소지도 다분함

나. 경영계 의견

- 제1항제2호의 ‘재해 발생 시’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로 수정하고,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함
- 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으로 수정하고,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함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제9조제1항·제2항)도 상기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수정하고, 시행령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함

현 행	수정(안)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u>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u> 3. <u>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u> 4. (생 략) <p>② ---- <u>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u>대통령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u>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중대산업재해</u> ----- ----- 3. ----- <u>안전·보건 관계 법령</u> ----- ----- 4. (생 략) <p>② ---- <u>각 호의</u> ----- -----</p>
<p>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u>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u> 3. <u>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u> 4. (생 략) <p>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u>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u></p>	<p>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u>대통령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u>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중대시민재해</u> ----- ----- 3. ----- <u>안전·보건 관계 법령</u> ----- ----- 4. (생 략) <p>② ----- ----- -----</p>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생 략)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
행에 관한 조치
 4. (생 략)
- ③ (생 략)
-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
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1. (생 략)
 2. 중대시민재해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4. (생 략)
- ③ (생 략)
-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

-----.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보완입법 요청사항]

- 원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제4조의 조치 중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로 한정(제1호 제외)하고, 제3자가 해당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원청이 확인하는 의무규정으로 수정
-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가. 문제점

-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이하 원청)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제3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됨
- 원청도 하청의 사고예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도급을 준 원청의 책임이 해당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하청과 동일할 수 없음
- 제3자의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는 계약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을 대신하여 제4조의 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특히, 제4조제1항제1호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하청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원청이 준수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제4조제1항제2호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3호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도 하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원청의 역할로 부적합함

- 현행 산안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함

※ **(산안법)**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망 시 벌칙 없음, **(중대재해법)** 제4조 위반으로 특고종사자 사망 시 원청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원청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원·하청 간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청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책임의 혼선을 야기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음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임

- 원청에게 동일한 의무 등을 부여하면 오히려 하청은 원청에게 책임을 넘기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발생함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원청에게 공동으로 부과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음

-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은 원·하청에게 각각 자신의 역할에 맞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원은 사고 발생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개별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법률 내용만으로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제5조 후단 단서규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을 준 법인의 책임범위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제4조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원청이 책임져야 할 도급, 용역, 위탁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한편, 현행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관리’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 시 원·하청간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경영계 의견

- 원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제4조의 조치 중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로 한정(제1호 제외)하고, 제3자가 해당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원청이 확인하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해야 함
-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함

현 행	수정(안)
<p>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p> <p>제3자가 자신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p>----- 대통령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p>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6조)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 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완입법 요청사항]

- 사망자 발생 시 형벌을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에서 상한 설정(0년 이하 징역)방식으로 변경, 상해 발생 시 형벌 수준 하향
-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위탁한 경우 면책규정 마련

가. 문제점

-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하한형의 징역형 부과는 형법상 고의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부과하는 형량임
 - 하한형 징역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적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상해치사죄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임
 -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 법의 형량은 불법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함

- 기업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행위자보다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체계와 맞지 않음
 - 법 위반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통제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형벌임
 - 동 법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균형성을 잃은 형벌의 지나친 강화는 법체계적으로 정당치 않음

- 상해(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까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현행 산안법상 사망 시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임
 - 산안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시까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산안법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형벌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조치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직접성 연관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함
 -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는 주로 관리상의 조치내용으로 동 의무 위반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님에도,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벌임
 - 현행 산안법은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와 같이 위반 시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법률에는 경영책임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였거나,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음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정부인증 전문업체에게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맡긴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나. 경영계 의견

- 사망자 발생 시 형벌을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에서 상한 설정방식(0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하고, 상해 발생 시 형벌 수준을 하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해야 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함

현 행	수정(안)
<p>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생략></p> <p>④ <신설></p>	<p>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 ----- 0년 이하의 징역-----.</p> <p>②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정부가 인증한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p>

7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제7조)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보완입법 요청사항]

- 사망자 발생 시 법인 벌금을 20억원 이하로 하향
-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법인 벌금을 1억원 이하로 하향

가. 문제점

-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으며,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매우 과도한 형벌임
 - 법인의 처벌근거는 주의감독(과실범)의 책임(제7조 후단 단서규정도 과실책임 규정)인 만큼, 법을 직접 위반한 행위자보다 더 높게 벌금을 설정하는 것은 과잉처벌임
 - 동 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벌금은 사망 시 10억원 이하, 상해 시 1억원 이하 벌금이나,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상해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 산안법은 사망 시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법이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법인에 대한 처벌을 5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형벌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함

나. 경영계 의견

-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은 주의감독(과실) 책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하향(사망 20억원 이하, 상해 1억원 이하) 해야 함

현 행	수정(안)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생 략) 1. 제6조제1항의 경우: <u>50억원</u>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u>10억원</u> 이하의 벌금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생 략) 1. 제6조제1항의 경우: <u>20억원</u>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u>1억원</u> 이하의 벌금

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보완입법 요청사항]

안전보건교육이수 대상을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한정

가. 문제점

- 법 위반 여부 확정 없이 중대재해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제6조(경영책임자 처벌), 제7조(양벌규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는 처벌 및 배상책임을 이 법에서 정한 의무(제4조 및 제5조)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한정하고 있음
 - 반면에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현행 산안법(제174조)도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경영계 의견

-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함

현 행	수정(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 ----- .

9 손해배상의 책임(제15조)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보완입법 요청사항]

손해배상액을 **3배 이내로 제한**

가. 문제점

-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과 벌금 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체계와 맞지 않음
 - 현재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에게 형벌로서 기능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함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외국 입법례도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도 예외적으로 매우 드물게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가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

-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은 실질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실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됨
 - 민사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로 배상범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배상법의 기본원리임
 - 피해자의 실질손해를 넘어서는 5배 이내의 배상강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국내 일부 개별법*에서도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하고 있음
 - * 제조물책임법, 특허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 동 법의 제정으로 인해 향후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기대한 무분별한 소송 남발,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배상금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나. 경영계 의견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함

현 행	수정(안)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 ----- ----- ----- 3배 ----- ----- ----- -----
② (생략)	② (생략)

10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보완입법 요청사항]

- 법 시행일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포 후 2년간 유예
-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가. 문제점

- 동 법의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년에 바로 법이 시행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이 법에 따라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행령 제정(7~8월 예상) 후 법 시행(22.1.27)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수적인데, 기업들이 내년 1월까지 필요한 전문인력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함
- 50명 미만 사업장이 하청인 경우 원청만 중대재해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형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부칙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은 동 법의 시행시기를 3년 유예(24.1.27 시행) 하였으나, 유예기간 중 50명 미만 하청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만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함
 - 하청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하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도급, 용역, 위탁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원청만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원청에 대한 지나친 형벌임

나. 경영계 의견

-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법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23.1.27 시행)해야 함

현 행	수정(안)
<p>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p> <p><신 설></p> <p>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생 략)</p>	<p>부칙 제1조(시행일) ① ----- 2년----- ----- . (이하 생략)</p> <p>제2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의무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 (다른법률의 개정) (생 략)</p>

11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제0조, 제00조)

<신 설>

제0조(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종사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00조(중대산업재해 종사자의 처벌) ① 제0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종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0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종사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완입법 요청사항]

-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신설
-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종사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가. 문제점

- 산업재해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부여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기업의 안전규정 미준수 외에도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행동이 중첩되어 발생함
 - 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2014년 산업재해 원인조사(사고사망자 829명)에 따르면 모든 사망사고에 필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근로자가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규제방식으로는 중대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음

나. 경영계 의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조치에 종사자가 따를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해야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종사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현 행	수정(안)
<신 설>	제0조(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종사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00조(중대산업재해 종사자의 처벌) ① 제0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종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0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종사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끝>